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33호

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52호(2009.6.25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2022.1.14.일자로 조합 설립인가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제12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
2025년 3월 13일
서울특별시 장

1. 재정비촉진구역(정비구역)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	조합설립인가일	일몰기한	비 고
당 초	전농12재정비 촉진구역	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	16,237	2009.6.25	2022.1.14	2025.1.13.	2년 연장
변 경						2027.1.13.	

2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(일몰)기한 연장

3.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(☎02-2133-7217),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127-42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